고흥군의회 공고 2020-8 호

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명단 공고

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흥군수로부터 2019 회계연도 결산서가 제출됨에 따라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6. 16.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가. 결산검사의견서

○ 붙임 참조

나. 결산검사위원 명단

소속	직	성명
고흥군의회	의원 (대표위원)	**정종열**
박영인 세무회계사무소	세무사 (위원)	**박영인**
달인세무사 김철용사무소	세무사 (위원)	**김철용**
정희도 세무회계컨설팅	세무사 (위원)	**정희도**
세무사 박동호사무소	세무사 (위원)	**박동호**

【붙임】

결산검사의견서

고 흥 군 수 귀하

2020년 4월 25일

우리 위원들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고흥군의회로부터 고흥군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0년 4월 6일부터 2020년 4월 25일까지(20일간)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고흥군수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의 결산, 재무제표, 성과보고서, 결산서의 첨부서류, 금고의 결산 등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고흥군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정 종 열 (서명)

위 원 박 영 인 (서명)

위 원 김 철 웅 (서명)

위 원 정 희 도 (서명)

위 원 박 동 호 (서명)